

【 7 】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

제출년월일 2008년 10월 일

제 출 자 양 주 시 장

1. 요구이유

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 아동 등의 재활치료를 위한 「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」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「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」 설치 개요

- 설치시기 : 2008.11월~12월
- 장 소 : 추후 적의선정(이용자의 접근성 고려)
- 규 모 : 330㎡내외(임차)
- 교육내용 : 음악, 미술, 놀이, 인지, 언어, 작업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
- 이용대상 : 19세이하 자폐성장애, 지적장애 아동 등 (2008.9월 현재 290명)
- 운영인력 : 7명~12명(센터장 및 사회복지사, 재활치료사 등)
- 운영방법 : 민간전문기관에 위탁
- 사업비 : 355백만원(도비 50%, 시비 50%)

나. 민간위탁 추진계획

- 모집방법 : 공개모집
- 모집시기 : 2008.11월중
- 수탁기관 모집범위 : 경기도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- *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.
- * 지원법인 제외
- 위탁기간 : 3년
- 수탁기관 선정기준
 - 사업계획의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, 재정부담능력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 - 양주시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

다. 민간위탁 사무

-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프로그램 운영
 - 음악, 미술, 놀이, 인지, 언어, 작업치료 등
- 주요시설 설치 및 관리
 - 프로그램실, 부모대기실, 사무실, 장애인편의시설 등
-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주시가 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조건

- 수탁법인은 매년 『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』 운영비로 매년 10% 이상을 자체부담 하여야 함.
※ 심사항목으로 “재정부담 계획”을 심사
- 자체부담율은 위·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운영비로 운영하여야 함.
- 프로그램별 실비이용료는 기타 사설기관의 1/3수준으로 산정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무료로 함.
-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.
단, 실비이용료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 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.
- 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 기준

- 센터장(상근직) : 사회복지사(1급이상), 특수학교 교사,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이상 경력자
- 사회복지사(상근직) : 사회복지사(2급이상)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경력자
- 계약직(비전임) : 음악, 미술, 놀이, 인지, 언어, 작업, 재활(물리, 감각, 작업)치료사 등

※ 각 해당분야 업무분야별 유자격자 공개채용 원칙

- 장애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
- 「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위수탁 협약 사항 준수
- 「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」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 사용금지
- 위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없음.
-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.

마. 관계법령 발췌서 : 불임

- 장애인복지법 제18조(의료와 재활치료)
-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소관 실·과		주민생활지원과
제 안 자	실·과 장 직위·성명	주민생활지원과장 강 호 습
	담 당 직위·성명	장애인복지팀장 박 혜 련
	담 당 자 직위·성명	장애인복지팀 안 수 지 (☎ 2790)

[불임]

관 계 법령 발 췌 서

장애인복지법

제18조 (의료와 재활치료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 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 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